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*****
- 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경정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	19,480,530	19,480,530	0

- 붙임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-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- 3. 국세청 통보자료 1부. 끝.

주무관 **최필순** 지방소득세4팀 **박종수** 세입관리팀장 **이정현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6/22
김용운

협조자